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51 발의연월일: 2025. 1. 13.

발 의 자:조지연·엄태영·박준태

이인선 • 한지아 • 박덕흠

김소희 · 김형동 · 최수진

최은석 · 강대식 · 김도읍

임이자 · 김장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아닌 자가 기업의 불안심리 등을 악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고, 법정교육을 빌미로 보험영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 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3조 및 제175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이 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5조제5항제1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3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이 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
	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여서는
	<u>아니 된다.</u>
제175조(과태료) ① ~ ④ (생	제175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략)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⑤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1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	
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	
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우만 <u>해당한다)</u> , 제3	<u>해당한다), 제33</u>
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	<u> 조제5항</u>
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
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
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
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
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
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
을 위반한 자

2. ~ 16. (생 략)

⑥・⑦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2. 10. (U 0 1 E II)
⑥·⑦ (현행과 같음)